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08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위성곤·이기헌·김한규

박홍배ㆍ허 영ㆍ이건태

전재수 · 서영교 · 박해철

이원택 • 정준호 • 문대림

의원(12인)

제안이유

이 법은 2000년 제정 이후 2021년 전부개정 등 여러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보완되어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에 이바지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상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강제 연행·구금되어 고 문과 폭행에 시달렸음에도 수형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희생자 에 포함되지 않고, 아픔을 겪어온 유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 근거 가 없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 법률과 관련한 결정문에서 '제정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희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입법의 취지를 살리는 등의 조화로운 법률인식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4·3희생자가 포함되지 않은 유족

들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족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연행·구금된 사람을 희생자에 포함하도록 범주를 넓히고,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권을 확대하는 한편,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유함은 물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에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포함 (안 제 1조).
- 나. 희생자의 범주에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연행 및 구금된 사람을 포함 (안 제2조제2호).
- 다.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유족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5조제2항제9호).
- 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접수와 조사, 사실상 혼인 관계 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사는 비 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7조의2 신설).
- 마.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가 기재된 결정 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바. 고의성과 무관하게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역사적 사실의 부인・왜

- 곡·날조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31조).
- 사. 특별재심의 대상 범위를 희생자로 한정하지 않고,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4조).
- 아. 보상 대상에 유족을 추가하고, 연행 또는 구금 희생자에 대한 보 상규모를 규정함(안 제16조).
- 자.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의 청구기간 및 시효 기준을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규정함(안 제18조의6 신설).
- 차.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과 혼동할 여지가 많아 제주4·3 치유와 회복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3조).
- 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 제주4·3복지재단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법률 제 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보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람 또는"을 "사람, 연행 및 구금된 사람 또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희생자"를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조사의 비공개) 제6조제2항제3호·제7호 및 제8호와 관련한 위원회의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록, 회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의2(결정서의 작성 및 교부) ① 위원회는 제12조, 제21조의2, 제 21조의3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가 기재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2조, 제21조의2, 제21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 혼인신고 또는 입양신고로 신분관계가 변동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를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로, "유포하여"를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 중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을 "제주4·3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희생자는 그 유족, 희생자로 결정되지아니한 사람은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과 유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 람:"을 각각 "사람과 그 유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그 사람과 그 유족 에게 제1항제2호"로 한다.

4. 연행 또는 구금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지급 결정 연

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제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6(청구기간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2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늦은 날을 「민법」 제166조제1 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 1. 제12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 은 날
 - 2. 제14조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
- ③ 제20조와 제21조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3제5항 전단 중 "사실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사실상"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제주4·3 치유와회복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제주4·3 치유와 회복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4·

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제주4⋅3 치유와 회복사업"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제주4·3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제주4·3사건 관련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의료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4· 3복지재단을 설립한다.
 - ② 제주4·3복지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제주4·3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중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의료지원"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3조를 위반하여 제주4.3사건에 대하여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받은 희생자의 유족인 사람에게도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3사	제1조(목적)
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	
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	
의 명예회복 및 <u>희생자에 대한</u>	<u>보상</u>
<u>보상</u> 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	2
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	
은 <u>사람 또는</u> 수형인(受刑人)	<u>사람, 연행 및 구금된 사</u>
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u>람 또는</u>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	제5조(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
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생	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②
항을 심의·의결한다.	

- 1. ~ 8. (생 략)
- 9. <u>희생자</u>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 10. ~ 15. (생략)
- ③ ~ ⑨ (생 략)
- <신 설>

<신 설>

- 1. ~ 8. (현행과 같음)
- 9. <u>희생자와 유족</u>-----
- 10. ~ 15. (현행과 같음)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조사의 비공개) 제6조 제2항제3호·제7호 및 제8호와 관련한 위원회의 심사는 비공 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 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 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록, 회 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 개할 수 있다.

제12조의2(결정서의 작성 및 교부) ① 위원회는 제12조, 제21조의2, 제21조의3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가기재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2조, 제21 조의2, 제21조의3에 따른 위원 회의 결정, 혼인신고 또는 입 양신고로 신분관계가 변동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교부 할 수 있다.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저보호) 누구든지 <u>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u>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u>유포하여</u>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4조(특별재심) ① <u>희생자로서</u> 기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 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 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 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

제1	[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j	보호) <u>①</u> <u>공개된 집회</u>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
l	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
j	체를 통하여
_	
_	유포하
ć	 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
	· 날조하거나
_	
_	
_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
	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
_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
Ç	 한다 <u>.</u>
	 [4조(특별재심) ① 제주4·3사
	건
_	
_	
_	
_	
_	
_	

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
다.				

② (생략)

<신 설>

③·④ (생 략)

-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 자로 결정된 <u>사람</u>에 대하여 사 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 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 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 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 을 지급한다.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로 결정된 <u>사람</u>: 9천만원
 -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2.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
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희생자는 그 유족, 희
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은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 • 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u>4</u>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16조(보상금) ①
<u>사람과 유족</u>
<u> </u>
1
<u>사람과 그 유족:</u>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사람과 그 유족: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u>사</u> <u>람</u>: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 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 나. (생 략)

<신 설>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u>제1항제2호</u>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 ⑦ (생 략)

<u> </u>
3
교 리미 ㅋ ㅇᄌ·
<u> 람과 그 유족:</u>
··
가.•나. (현행과 같음)
, , , , = - , - , .
4. 연행 또는 구금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
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미윘이기근
대한 위자료
②
그 사람과 그
<u>유족에게 제1항제2호</u>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6(청구기간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을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2조, 제21조의2 및 제21 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늦은 날을 「민법」 제166조제1항 및 「국가배상 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 1. 제12조, 제21조의2 및 제21

 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

 을 통지받은 날
- 2. 제14조에 따른 재심 절차에
 서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
 ③ 제20조와 제21조에 따른 청
 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을 준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① 7 ~ ④ (생 략)

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 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 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0 2 1.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1
~ ④ (현행과 같음)		
⑤		
<u>대</u>	통령령의	<u> 으로</u>
정하는 요건에 따라	사실상	
		. –
제23조 <u>(제주4·3</u> 치유	와 회트	<u> 추사</u>
업) ①		
	- <u>제주</u>	<u>4 ·</u>
3 치유와 회복사업-		

용하다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u>제주4·3트라</u> 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 제주4・3 치 유와 회복사업-----

제23조의2(제주4·3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제주4・3사건 관 련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복지증진 및 의료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4・3복지재단 을 설립한다.

- ② 제주4・3복지재단은 법인으 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주4·3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 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제주4·3복지재단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 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

에의 출연) -----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											
-	생흑	할인	·정,	连	¦지	증	진	및	. 0	료	지
-	<u>원</u>										
1) (312	조(박	벌칙)	1	~	_	3	(ই্	년 행	과

- 제31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3조를 위반하여 제주4.3 사건에 대하여 부인·비방·왜 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 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